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54호 2020. 1. 23.(목)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66호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1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29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7
 남해군 훈령 제330호 남해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27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5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9
 남해군 고시 제2020- 11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32
 남해군 고시 제2020-14호 「남해군 중심시가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3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9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41
 남해군 공고 제2020-19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46
 남해군 공고 제2020-43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47
 남해군 공고 제2020-66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소멸 공고 50
 남해군 공고 제2020-88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51
 남해군 공고 제2020-91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56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6, 행정 3046)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66호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부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심의 결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0조 관련)

항목	심사자료	세부 기준	배점
합계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40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div>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div>	
		<input type="checkbox"/>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남 해 군 공 보

(6) 제 654호

2020년 1월 23일

항목	심사자료	세부 기준	배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29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공포한다.

2020년 1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남해군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남해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지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본청 : 민원봉사과장
2. 소속기관 :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된 공간정보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남해군 보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하며,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 공간정보”라 한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 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자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 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 권한 제한
 - 나. 작업 범위 제한
 -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 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관리(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5.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 ② 군수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의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 군수는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 유통망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의 복제·출력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출력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보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호구역 설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군수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등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군수는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보안상 위험하고 유해한 행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군수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를 보내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군수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3조(보안지도)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군수는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점검 및 감사)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안감사를 위하여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한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보안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6조(보안사고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 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공간정보 보안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관리번호	생산년도	공간정보 목록	자료구분	자료형태	수량	보관장소	비 고

※ 자료구분란에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관리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 태	수량(건)	보호기간	보관장소	비 고

※ 비고란에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공 일시	내 용	방법	열람·수령자		제공사유	비고
				소속	성명		

※ 비고란에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보안대책				
반납여부		반납일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

요 청 자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 당 성	
				검 토 자
승 인 사 항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만약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회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 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남 해 군 공 보

(22) 제 654호

2020년 1월 23일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을 말한다)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개 제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 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 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공간정보의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남해군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남해군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함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 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 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해군 훈령 제330호

남해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공포한다.

2020년 1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 를 “제19조”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7조” 를 “제19조” 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기산하여 1년10개월” 을 “계산하여 6개월” 로, “있거나(군 경력자는 제외)과거 1년10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내에서 타인에게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택시, 버스, 개별용달, 개별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를 “있는 자(군경력자는 제외)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5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공고 제2019-1451호(2019.10.24.)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서변리 24-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재무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9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재무과(☎055-860-3188)에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군청	군 청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8,442	증)7,627	16,069	경상남도 고시 제391호 (1993.11.2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해군청	○면적증가(증7,627㎡) A=8,442㎡→16,069㎡	○군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필요성 및 주민편의와 군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래 지향적 군청사를 확장코자 금회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하고자 함

2.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410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0	8	국지도로	230	남해읍 서변리 46-1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646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9	8~12	국지도로	651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301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2	8	국지도로	116	남해읍 서변리 65-44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7	15	국지도로	171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46-1	일반도로	-		도시지역
신설	중로	3	11	12	국지도로	175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5-41	일반도로	-		도시지역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0호선	소로2-20호선	○노선축소 -L = 410m → 230m	○공공청사(군청) 확장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로위계를 고려하여 기점부를 축소하고자 함
소로2-39호선	소로2-39호선	○도로폭 및 연장 변경 -B = 8m → 8-12m -L = 646m → 651m	○공공청사(군청) 확장에 따라 일부구간 도로폭 확장으로 인한 도로폭 및 연장을 변경하고자 함
소로2-42호선	소로2-42호선	○노선축소 -L = 301m → 116m	○공공청사(군청) 확장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로위계를 고려하여 기점부를 축소하고자 함
-	중로2-7호선	○노선신설 -B = 15m, L = 171m	○공공청사(군청) 확장에 따라 도로폭이 변경되어 기존노선(소로2-20호선)에서 분리시켜 신설하고자 함
-	중로3-11호선	○노선신설 -B = 12m, L = 175m	○공공청사(군청) 확장에 따라 도로폭이 변경되어 기존노선(소로2-42호선)에서 분리시켜 신설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20 - 11호

남해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7-120호(2017.11.10.), 제2019-24호(2019.02.28.)로 결정(변경) 고시된 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에 대하여 남해군 고시 제2018-47호(2018.04.04.), 제2019-25호(2019.02.2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 9.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설리유원지)사업
 - 명 칭 : 대명리조트 남해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93,1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당초 - (주)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 주 영
 변경 - (주)소노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 주 영, 서 준 혁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변경 없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 도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당초 - 2020. 12.
 변경 - 2023.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7. 관계도면 : 실음생략(변경없음)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남해군 고시 제2020-14호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건부 승인한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16.

남 해 군 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개요 및 범위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오시다	중심시가지형	200	2019~2023 (5년간)
	사업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북변리 157일원	사업면적	198,709㎡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경상남도 남해군, 한국관광공사			
사업 필요성	남해군 중심지인 남해읍의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역이 쇠퇴하고 주변 면지역에 형성된 관광자원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도시 기능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및 효과	-마중물(8개사업), 부처연계(1개사업), 지자체(4개사업) -관광중심 기능구축/주민활력 공간조성/대학연계 지역자 산 특화/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지자체 및 부처연계사 업			상세 ㉢ 참조
재원 조달방안	549억원(국비286 지방비231 민간33)			상세 ㉤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상세 ㉦ 참조

활성화계획도

마스터플랜

보물섬남해오시다

관광산업 + 스마트 공공인프라 + 대학타운상권의 재구조화를 통한 중심지까지 회복

관광중심 기능구축

1. 상생물결품 조성(여행자안내센터)
 HW 1-1. 관광데크(남해로지 센터)지역특색상징
 1-2. 관광데크(남해로지) + 디지털여유마을
 1-3. 도시재생활성화 + 주민편의SOC시설
 SW 1-1. 통합관광 콘텐츠 개발(남해여행 APP)
 1-2. 바다출 개발/영상 개발
 1-3. 탐방로 교육 및 컨설팅
 1-4. 주민관광로리 프로그램 개발
 1-5. 공간별 운영주체 교육

2. 공공속박시설 조성
 HW 1-1. 스마트 숙박 및 시설업 구축
 SW 1-1. 지역상권연계 커뮤니티 디자인개발
 1-2. 운영주체 교육 및 컨설팅

3. 관광특화거리 조성
 HW 1-1. 관광특화거리 조성(상생물결품12개소)
 1-2. 남해특화상품 개발 및 교육
 SW 1-1. 남해특화 브랜드 개발 및 교육
 1-2. 화진포리마켓

주민활력 공간조성

4. 가로환경개선
 HW 1-1. 무장애 통행로 조성
 1-2. 안전물결품 조성

5. 주민휴게공간 개선
 HW 1-1. 공공휴게공간 개선
 1-2. 주민휴게공간 개선

대학연계 지역자산 특화

6. 남해신생산업 활성화
 HW 1-1. 지역특화상생(세프의 집) 조성
 1-2. 신생물결품 조성
 SW 1-1. 아간부드페스타빌 운영
 1-2. 시장 특화 브랜드 개발 및 교육

7. 청년문화공간 조성
 HW 1-1. 청년문화공간(트리밍하우스)
 1-2. 청년문화공간(트리밍하우스)
 SW 1-1. 체험프로그램 개발
 1-2. 운영주체 컨설팅 및 교육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

8.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
 HW 1-1. 주민역량강화
 1-2. 캐비닛스 운영
 1-3. 주민공모사업
 1-4. 지역연계 및 주민편의 계획
 1-5. 아간길로 개발
 1-6. 보행여행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및 부처연계사업

9. 지자체 및 부처연계사업
 1-1. 아간길로 조성사업
 1-2. 문화유물 사업
 1-3. 남해인생상 물리마켓
 1-4. 청년창업 지원사업
 1-5. LPG배관지원사업

6. 남해시장 활성화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조성 및 아간부드페스타빌 운영

4. 가로환경 개선
무장애 통행로 및 안전물결품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행안전 증대

7. 청년문화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강화코리빙 공간 조성

1. 상생물결품 조성
남해읍 방문 관광객의 전문역량의 통합관광서비스 거점 조성

2. 공공속박시설 조성
지역상권 연계한 커뮤니티형 스마트 공공속박시설 조성

5. 주민휴게공간 개선
버스승강장 시설을 개선 및 주민휴게공간 개선

3. 관광특화거리 조성
보행로 개선 및 미디어물(스마트)로등 설치를 통해 관광특화거리 기반 조성

8.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역콘텐츠 개발 등 계획 및 추진

Seabed

Purity

Healing

Nature

Community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비전	공간의 재생과 함께 문화·관광적 특징을 매개로 지역활성화
목표	삶의질 향상/도시경쟁력 회복/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합계	548.94	
	소계	200.00	
마중물 사업	1. 창생플랫폼 조성	82.64	·관광테크놀로지센터 및 지역특화상점 조성 ·창생센터 및 디지털아쿠아리움 조성 ·주민편의 SOC시설 조성
	2. 공공숙박시설(리모델링)	32.70	·스마트숙박시설 구축 및 지역상권 연계
	3. 관광특화가로 조성	23.20	·남해특화상점 조성 및 화전프리마켓 운영
	4. 가로환경 개선	10.39	·무장애 통학로 및 안심골목길 조성
	5. 주민휴게공간 조성	2.29	·공공시설물 및 주민휴게공간 개선
	6.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8.00	·시장특화상점(쉐프의집) 및 식음공간 조성 ·푸드페스티벌 및 시장특화브랜드 개발
	7. 청년문화공방 조성	19.43	·청년문화공방1(트리하우스) 조성 ·청년문화공방2(라이딩하우스)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8.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	21.35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지역축제 및 이벤트 개최 ·아간경관 개발 ·보물여행 프로그램 개발
	소계	331.00	
부처 연계 사업	LPG배관망 지원사업	331.00	·남해읍 LPG 배관망 설치 지원
	소계	17.94	
지자체 사업	1. 아간경관 조명사업	5.00	·남해읍 일대 아간경관 거리 조성
	2. 문화우물 사업	0.07	·마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3. 남해전통시장 플리마켓	6.27	·남해전통시장 내 상시적 플리마켓 및 프로그램 운영
	4. 청년상인점포지원사업	6.60	·지역청년 대상 창업 공간 및 컨설팅 지원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 창생플랫폼, 공공숙박시설, 관광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남해읍의 관광허브역할 회복 및 관광활성화 유도
- 가로환경개선, 주민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활력공간 제공
-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청년문화공방 조성을 통한 대학과 청년은 지원하고 지역 자산을 특화
-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의 능력을 개발하여 남해의 관광을 활성화 함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 치	규 모	사업내용	비고
플랫폼 센터	창생플랫폼 조성	82.64	남해읍 북변리 276-10, 276-6, 275-8, 275-4	1,980㎡(연면적)	창생플랫폼 신축	
숙박시설	공공숙박시설 조성	32.70	남해읍 북변리248-9	1,192㎡(연면적)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관광특화가로 조성	23.20	남해읍 북변리 248-12 이면도로 일원	740m	도로 재포장, 미디어 폴 6개소 설치, 스마트 가로등 12개소	
도시계획도로	가로환경 개선	10.39	남해읍 북변리 629 일원	450m	도로 재포장, 스마트가로등 7개소 설치	
휴게공간	주민 휴게공간 개선	2.29	남해읍 화전로 81	140㎡(연면적)	버스정류장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빈점포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8.00	남해읍 화전로 110	시장 빈점포4곳(59㎡)	빈점포 리모델링	
코워킹코리빙 하우스	청년문화공방 조성	19.43	망운로 1-16, 망운로9번길 21-4	트리하우스 (224㎡) 라이딩하우스 (284㎡)	주택 리모델링	

*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제10호) "도시재생기반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다.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위 내용은 사업추진 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㉔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합계	548.94	286	231			33.00
	소계	200.00	120	80			
마중물 사업	창생플랫폼 조성	82.64	49.59	33.05			
	공공숙박시설 조성	32.70	19.62	13.08			
	관광특화가로 조성	23.20	13.92	9.28			
	가로환경개선	10.39	6.23	4.16			
	주민휴게공간 개선	2.29	1.37	0.92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8.00	4.80	3.20			
	청년문화공방조성	19.43	11.66	7.77			
	관광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21.35	12.81	8.54			
	소계	331.00	166.60	132.40			33.00
부처 연계사업	LPG배관망 지원사업	331.00	165.60	132.40			33.00
	소계	17.94		15.33			2.61
지자체 사업	야간경관 조명사업	5.00		5.00			
	문화우물사업	0.07		0.06			0.01
	남해전통 플리마켓	6.27		6.27			
	청년상인점포지원사업	6.60		4.00			2.60

㉕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548.94	161.34	351.36	14.2	10.5	8.9	
소계	200.00	32.78	137.70	12.84	9.14	7.54	
마중물 사업	국비	120.00	19.67	82.62	7.70	5.49	4.52
	지방비	80.00	13.11	55.08	5.14	3.65	3.02
	공기업
	기금
	민간		.	.			
부처 연계 사업	소계	331.00	123.70	207.30	.	.	.
	국비	165.60	61.50	104.10	.	.	.
	지방비	132.40	49.20	83.20	.	.	.
	공기업
	기금
민간	33.00	13.00	20.00	.	.	.	
지자체 사업	소계	17.94	7.47	6.36	1.37	1.37	1.37
	국비
	지방비	15.33	4.86	6.36	1.37	1.37	1.37
	공기업
	기금
민간	2.61	2.61	

남 해 군 공 보

2020년 1월 23일

제 654 호 (39)

㉑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가. 사업 평가 및 점검 계획

구분	대상사업	평가지표	평가(점검) 시기	평가자 (점검자)	비고
마중물 사업	1. 창생플랫폼 조성	· 관광시설 방문객 수 증가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수 증가	연1회	남해군	
	2. 공공숙박 시설조성	· 관광시설 방문객 수 증가 · 소매점 매출액 증가	연1회	남해군	
	3. 관광특화 가로조성	· 유동인구 증가 · 상권 매력도 향상	연1회	남해군	
	4. 가로환경 개선	· 유동인구 증가 · 공동체 행사 수 증가	연1회	남해군	
	5. 주민휴게 공간조성	· 주거환경 만족도 향상	연1회	남해군	
	6. 남해전통시장 활성화	· 관광시설 방문객 수 증가 · 공동체 행사 수 증가	연1회	남해군	
	7. 청년문화공방 조성	·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수 증가 · 관광시설 방문객 수 증가	연1회	남해군	
	8. 관광활성화 및 역량강화	· 마을기업 창업 수 증가 ·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수 증가 · 공동체 행사 수 증가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향상	연1회	남해군	
부처 연계사업	1. LPG배관망 지원사업	-	연1회	남해군	
지자체 사업	1. 야간경관 조명사업	· 보행 통행량 증가	연1회	남해군	
	2. 문화우물 사업	· 공동체 행사 수 증가	연1회	남해군	
	3. 남해전통시장 플리마켓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향상 · 방문객 만족도 향상	연1회	남해군	
	4. 청년상인점포 지원사업	· 상가공실률 감소 · 마을기업 창업 수 증가	연1회	남해군	

㉔ 도시재생특별법 제 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위치	기간	사유	행위제한 내용
해	당	없	음

9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055-860-3238)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9 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년 1월 3일

남 해 군 수

-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0. 1. 2.
- 2. 사유
 - 폐기 및 등록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부서 폐지 및 신설·변경

3. 등록, 폐기 공인명. 인영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관광진흥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관광진흥담당관
남해군관광진흥담당관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남 해 군 공 보

(42) 제 654호

2020년 1월 23일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문화청 소년과일상경 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문화청소년 과
남해군문화청 소년과분임재 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안전총 괄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안전총괄과
남해군안전총 괄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농촌활 력과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농촌활력과
남해군농촌활 력과분임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체육시 설사업소장인	2.1cm 정사각형	폐기		체육시설 사업소
남해군수인(체육시설사업 소전용)	2.1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체육시 설사업소재무 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체육시설사업소지출원의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체육시설 사업소
남해군체육시설사업소물품출납원의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체육시설사업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1.8cm 정사각형	폐기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장인	2.1cm 정사각형	폐기		상하수도 사업소
남해군수인(상하수도사업소장전용)	2.1cm 정사각형	폐기		상하수도 사업소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상하수도 사업소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지출원의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상하수도 사업소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물품출납원의인	1.8cm 정사각형	폐기		상하수도 사업소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1.8cm 정사각형	폐기		상하수도 사업소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청년혁신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행정복지국 청년혁신과
남해군청년혁신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문화관광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남해군문화관광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체육진흥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남해군체육진흥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수인체육진흥과민원전용	2.1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재난안전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남해군재난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상하수도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남해군상하수도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수인상하수도과민원전용	2.1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유통지원과분임재무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남해군유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사각형	등록		

남해군 공고 제2020 - 19 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년 1월 6일

남 해 군 수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0. 1. 2.

2.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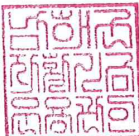
-폐기 및 등록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생활안정기금 폐지)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자활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인	2.0cm 정사각형	폐기		주민복지과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자활기 금운용관인	2.0cm 정사각형	등록		주민복지과

남해군공고 제2020-43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11호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9.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4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칭 :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468.6㎡
- 규모 : L=60m, B=10.0~3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문화청소년과)
- 주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9년 6월 15일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6개월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실음생략(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055-860-8623) 비치

8.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차산리	643-4	잡	1,370.6	1,370.6		남해군	-	
2	남해읍 차산리	821-1	도	7.0	7.0		남해군	-	
3	남해읍 차산리	822-1	도	16.0	16.0	남해읍 북변리 389-4	김*민		
4	남해읍 차산리	823-1	도	22.0	22.0	남해읍 아산리 388-1	이*일		
5	남해읍 차산리	825-3	도	53.0	53.0	남해읍 차산리 712	김*욱		
합 계				1,468.6	1,468.6				

남해군 공고 2020-66호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 및 소멸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정치 제137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삼동 물건	207,700	2020.01.19 2030.01.18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95-5	김순옥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정치 제57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삼동 물건	207,700	2010.01.19. 2020.01.18.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95-5	김순옥	기간 만료

※ 2019/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20-88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생활주변과 이웃의 각종 재해·재난·사고 등 위험·취약요인 발굴 및 신고 활성화와 신속한 예방 조치를 위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 가. 마을안전 지킴이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나. 지킴이 등의 위촉 및 해촉, 임기(안 제3조~안 제4조)
- 다. 지킴이의 활동 등(안 제5조)
- 라. 활동의견 수집 등, 활동보상, 운영계획 (안 제6조~안 제8조)
- 마. 교육, 증표 (안 제9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2월 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전화 055-86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과 이웃의 각종 재해·재난·사고 등 위험·취약요인 발굴 및 신고 활성화와 신속한 예방 조치를 위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활동”이란 생활주변과 이웃의 위험·취약요인을 발굴·신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마을안전 지킴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킴이 등의 위촉 및 해촉)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이라 한다)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리마다 1명을 위촉하되, 행정리의 주거지 분포와 특성 등에 따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킴이는 그 마을의 자연과 생활특성 및 구성 세대의 일반적인 사정에 밝은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가 제5조의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지킴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킴이의 임기는 전임 지킴이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킴이의 활동 등) 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재해·재난·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
2. 생활권역의 안전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3. 안전취약계층의 관찰과 취약점 등의 신고
4.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킴이는 제1항의 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신상과 그 유·무형 재산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영상정보 등의 위법한 취급 행위
2. 개인의 인권 및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3. 특정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거나 이웃 간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지시 등을 통해 주문하거나 권고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견 수집 등) 군수는 지킴이의 활동의견을 수시로 수집하여 그 의견에 따라 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킴이의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지킴이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워 1월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지킴이의 책무, 활동요령, 교육·훈련 및 시기별 재난환경, 안전관리활동수당의 지급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지킴이의 책임과 소양 및 안전관찰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킴이의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에 관한 취급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의 자질과 활동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소방·치안·해양수산·사회복지 전문기관 등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증표)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킴이 증표를 제작·발급하여야 하며, 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증표를 지녀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마을안전 지킴이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면)

 마을안전 지킴이
① 사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80px; margin: 10px auto;"></div>
남해군 ④
② 성명 : 0 0 0
③ 남해군 읍면행정복지센터

(뒷면)

⑤ 발급번호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 . . 주 소 : 위 사람은 「남해군 마을 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마을안전 지킴이 임을 증명 함 . . . ⑥ 남해군수 000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1. 마을안전 지킴이 증의 규격은 5.5cm(가로)×8.5cm(세로)로 한다.

2. 마을안전 지킴이 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
- ② 성명
- ③ 소속기관명
- ④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⑤ 발급번호 : 남해군-00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남해군 공고 제2020-91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 및 소멸 어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00304호	마을어업	해면패류/ 바지락	설천면 문항지선	1,660,000	2020.01.19 ~ 2030.01.18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문항어촌계	2020.01.17	재개발

○ 소멸 어업권 현황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00080호	마을어업	해면패류/ 바지락	설천면 문항지선	1,771,000	2000.01.19. ~ 2020.01.18	남해군 설천면	문항어촌계	재개발